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64
----------	-------

발의연월일 : 2026. 1. 6.

발 의 자 : 한정애 · 조인철 · 박지혜
박희승 · 허영 · 오세희
송옥주 · 윤후덕 · 이학영
서영석 · 염태영 · 진성준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발과 함께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잡화·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물순환의 개념을 자연계로 한정하고 있어 급·배수시설 등 인공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순환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폭넓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물관리계획”이라 함)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성과평가 절차가 미흡하여,

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유역 내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등 물관리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연계에 한정되어 있던 물순환의 개념에 인공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함(안 제3조).
- 나.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물관리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제23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 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함(안 제22조).
- 라. 위원회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 마. 물관리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7조의2 및 제28조의2).
- 바. 물관리 관련 계획이 둘 이상의 유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되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흐름”을 “흐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배수시설에 의한 물순환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학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대학, 공인된 연구기관 및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학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대학, 공인된 연구기관 및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제25조제1항 중 “위원의”를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변경하려는”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으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가계획의 이행평가) 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의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결과의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유역계획의 이행평가) 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역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의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결과의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변경하려는”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물관리 관련 계획이 둘 이상의 유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u>흐름</u> 을 말한다.	1. ----- ----- ----- ----- ----- <u>흐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배수시설에 의한 물순환을 포함한다)</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1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제21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 -----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	가. 대학에서 물관리 분야의

<u>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u> <u>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u> <u>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u> <u>한 사람</u> <u>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u> <u>10년 이상 종사한 사람</u> 다.·라. (생략) ④·⑤ (생략)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7. (생략) <u><신설></u> 8.·9. (생략)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u>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u> <u>나 있었던 사람</u> 나. 대학, 공인된 연구기관 및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 서 물관리 분야의 직에 10 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라.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 -----. 1. ~ 7. (현행과 같음) 8.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9.·10. (현행 제8호 및 제9호 와 같음)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유역 관계 시·도지사가 추천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 라. (생략)

④ · ⑤ (생략)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4. (생략)

<신설>

5. · 6.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대학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대학, 공인된 연구기관 및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 라.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

1. ~ 4. (현행과 같음)

5.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 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
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
다)의 위원 중 제21조제3항제3
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
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물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
3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
원 중에서 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
립 등) ①·② (생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
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 -----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위촉위원-----

-----.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
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신설>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러
는-----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국가계획의 이행평가)

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
검하여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
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
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의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u><신 설></u>	<u>결과의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8조의2(유역계획의 이행평가)</u> <u>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역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u> <u>②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의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결과의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유역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① ----- ----- ----- -----

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 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u>변 경하려는</u> 때에는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유역물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 다.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 -----<u>변경</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 ----- ----- -----<u>. 다만, 물관리</u> <u>관련 계획이 둘 이상의 유역에</u> <u>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u> <u>유역물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u> <u>정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u> <u>의할 수 있다.</u> ②·③ (현행과 같음)
---	---